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조경민



여수시 조례 제2222호

붙임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를 “여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종전의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으로, “따라서”를 “입각한”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종전의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9호) 중 “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를 “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6.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교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을 “보건·복지·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노인복지법」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 할”을 “생활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강관리 사업”을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31조”를 “법 제31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6조 중 “수행 할 수 있는”을 “수행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고령친화도시”로 한다.

제36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제42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37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를 제41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분청, 소속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7조) 제2항제3호 중 “고령친화”를 “고령친화도시”로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7조(중전의 제34조) 본문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중전의 제38조)제1항 중 “예산범위 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39조)제2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6. “고령친화”라 함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8. (생략)

<신설>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1. -----
--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 입각한 --- 고려--
--.

3. -----
--이란 -----.

4. (현행 제8호와 같음)

6.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9.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교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5. -----
--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
----- 보건·복지·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

-----.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보건복지 증진 등)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증진 사업 및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2. ~ 7. (생략)

<신설>

8. (생략)

제7조(노인건강진단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시가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고령자 의무 고용) ① 사

제6조(보건복지 증진 등) -----

-----.

1. --- 건강증진사업 -----

2. ~ 7. (현행과 같음)

8.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
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노인건강진단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

② 법 제27조제1항-----

-----.

제10조(고령자 의무 고용) ① ---

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2조(생업지원) ----- 법 제25조-----

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14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6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

제14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
----- 생활
할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로우대) ① ----- 법 제26조제1항-----

-----.

② ----- 법 제26조제2항 -----

-----.

③ -----
-----.

1. ----- 건강관리 사업

2. ~ 4. (생략)

제18조(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 무 등) ① (생략)

②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카드를 작성하여 시장과 제3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정책연구)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에 노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 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정책연구)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26조(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
행 할 수 있는 ‘노인취업교육지
원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신 설>

<신 설>

력하여야 한다.

제26조(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노인취업교육지
원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

제27조(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
화도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신 설>

<신 설>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2. (생략)
3. 고령친화 관련 추진 사항
4. (생략)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고령친화도시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 제33조 (생략)

제3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 (생략)

제5장 보칙

<신설>

제36조 · 제37조 (생략)

제38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9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 제36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37조(수당 등) -----

----- 범위에서 -----
----- . -

----- .

제38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삭제>

제6장 보칙

제39조 · 제40조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제41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 예산 범위에서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
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
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비
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0조 (생략)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② -----

- 범위에서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삭제>